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96
----------	-------

발의연월일 : 2026. 6. 4.

발 의 자 : 이훈기 · 권향엽 · 최민희
정진욱 · 장종태 · 이광희
황운하 · 김 현 · 조인철
양부남 · 박지원 · 정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이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피해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증폭시키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한 폭력·차별 선동 및 증오심 조장 정보를 불법 정보로 신설하고 있음. 그러나 명예훼손형 불법정보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고, 개정법상 혐오·차별 선동 정보는 열거된 차별사유와 폭력·차별 선동 또는 증오심 조장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특정 정치적·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모욕·조롱·희화화 표현은 규율 대상에 포섭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희화화 표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조롱·비하 표현 등은 사실의 적시나 허위·조작된 사실의 유포보다는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언사 또는 집단적 희화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 및 2026. 7. 7. 시행 예정 개정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정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음.

한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표현까지 무제한적으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첫째,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둘째, 조롱·혐오정보를 반복적·악의적으로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삭제·접속차단·노출제한·수익화 제한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롱·혐오정보의 반복적 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하여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넷째,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조롱·혐오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에 따라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토론·보도, 학술·예술 활동, 풍자 또는 패러디는 제외한다.

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모욕·조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을 모욕·조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6제1항 중 “제44조의20”을 각각 “제44조의21”로, “제44조의18”을 “제44조의19”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4조의20”

을 “제44조의21”로 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 제2호의3”으로 한다.

2의3. 제2조제1항제3호의4에 따른 조롱·혐오정보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제44조의9부터 제44조의27까지로 하고, 제4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8(조롱·혐오정보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조롱·혐오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해당 정보의 노출 제한 또는 검색·추천 제한
3. 해당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유통한 이용자에 대한 계정 이용제한
4. 해당 정보를 통한 광고·후원·수익배분 등 수익화 제한
5. 그 밖에 조롱·혐오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당 정보의 내용, 유통 경위, 피해 정도, 게재·유통의 반복 여부, 공공의 이익 관련성 및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해 확산 정도,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롱·혐오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하여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운영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제1항 각 호의 조치 또는 제6항에 따른 운영정지명령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기준·절차, 반복적 게재·유통의 판단 기준, 관련 매출액의 산정 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운영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의 기준·기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을 위반하여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하여 게재하거나 유통한 자

제76조제2항제4호의4 중 “제44조의9제1항”을 “제44조의10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의3. (생 략) <u><신 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① ----- -----. 1. ~ 3의3. (현행과 같음) <u>3의4. “조롱·혐오정보”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에 따라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인간 의 존엄성 또는 인격권을 중 대하게 침해하는 정보를 말한 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토론·보도, 학 술·예술 활동, 풍자 또는 패 러디는 제외한다.</u> <u>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모욕·조롱·비하·멸시하 거나 희화화하는 내용</u> <u>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u>

	<u>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 자 및 그 유가족을 모욕· 조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u>
4. ~ 13.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 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 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 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u>제44조의20</u> 에 따른 분쟁 조정외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 실을 소명하여 <u>제44조의18</u> 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 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u>제44 조의20</u> 에 따른 분쟁조정외 신 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 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 구) ① ----- ----- ----- ----- ---- <u>제44조의21</u> ----- ----- ----- ----- ----- <u>제44조의19</u> ----- ----- ----- ----- <u>제44 조의21</u> ----- ----- ----- -----

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신설>

3. ~ 9. (생략)

② (생략)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44조의21-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2조제1항제3호의4에 따른 조롱·혐오정보

3.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호의2, 제2호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의3-----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8(조롱·혐오정보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조롱·혐오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2. 해당 정보의 노출 제한 또는 검색·추천 제한

3. 해당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유통한 이용자에 대한 계정 이용제한

4. 해당 정보를 통한 광고·후원·수익배분 등 수익화 제한

5. 그 밖에 조롱·혐오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당 정보의 내용, 유통 경위, 피해 정도, 게재·유통의 반복 여부, 공공의 이익 관련성 및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해 확산 정도,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롱·혐오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하여 피해 정도와 사회적 과급력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운영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제1항 각호의 조치 또는 제6항에 따른 운영정지명령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기준·절차, 반복적 게재·유통의 판단 기준, 관련

	<u>매출액의 산정 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운영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의 기준·기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4조의8 ~ 제44조의26 (생략)	제44조의9 ~ 제44조의27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을 위반하여 조롱·협오정보를 고의로 반복하여 게재하거나 유통한 자
11. ~ 14. (생략)	11. ~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4의3. (생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